
Policy and Law Report _Vol.18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4.26.~5.7.) -

May 8,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5. 지난 주(4/26~5/7)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여 ① 2023년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현황 및 계획(산업부), ② 벤처투자시장 동향 및 정책대응(중기부), ③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방안(농식품부·해수부), ④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 이행점검(산업부) 등을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2023년 1분기 16.2조원 규모(총 27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지원 - 총 27개 투자 프로젝트(16.2조원) 애로사항 중 △해결완료 9건(3,080억원), △해결확정 3건(36억원), △개선·검토중 15건 < 투자/규제 애로 해소 프로세스 > 지역소재 기업 수시 결과 회신 지역별 접수센터 수시 결과 회신 서울소재 기업 수시 결과 회신 대한상의 규제·투자 애로 접수센터 투자애로 수시 결과 회신 산업부 현장방문·검토·협의 소관부처 지자체 관련기관 2월 이내 건의 접수 14일 이내 규제애로 격주 1회 결과 회신 국무조정실 ② 민간 벤처투자 촉진, 인재유입 등 벤처업계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신속 추진 - '23.1Q 실적은 전년 1분기 대비 60% 이상 감소한 8,815억원 - 투자 건수, 피투자기업 수, 기업당 투자액 역시 모두 감소 < 최근 5년간('19~'23)1분기 벤처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건, 개사) > <table><tr><th>19.1</th><th>'19.1Q</th><th>'20.1Q</th><th>'21.1Q</th><th>'22.1Q</th><th>'23.1Q</th></tr><tr><td>투자금액 (전년동기대비)</td><td>7,789 (+22.1%)</td><td>7,732 (△0.7%)</td><td>13,187 (+70.5%)</td><td>22,214 (+68.5%)</td><td>8,815 (△60.3%)</td></tr><tr><td>투자건수</td><td>774</td><td>719</td><td>1,054</td><td>1,520</td><td>885</td></tr><tr><td>피투자기업 수</td><td>418</td><td>405</td><td>604</td><td>757</td><td>532</td></tr><tr><td>기업당 투자액</td><td>18.6</td><td>19.1</td><td>21.8</td><td>29.3</td><td>16.6</td></tr></table> □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하반기 전망 (벤처투자) M&A·상장(IPO) 시장침체, 경기 불확실성 증가, SVB 파산의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단기간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지속, 기업가치와 시장가격 간 불일치 등을 고려하여 벤처캐피탈 업계는 투자시기 관망 중 (펀드결성) 개인·기관 출자자의 보수적 출자 기조, 채권 등 안전자산 선호로 펀드결성 어려움 지속 전망	19.1	'19.1Q	'20.1Q	'21.1Q	'22.1Q	'23.1Q	투자금액 (전년동기대비)	7,789 (+22.1%)	7,732 (△0.7%)	13,187 (+70.5%)	22,214 (+68.5%)	8,815 (△60.3%)	투자건수	774	719	1,054	1,520	885	피투자기업 수	418	405	604	757	532	기업당 투자액	18.6	19.1	21.8	29.3	16.6	2023-04-28
	19.1	'19.1Q	'20.1Q	'21.1Q	'22.1Q	'23.1Q																										
투자금액 (전년동기대비)	7,789 (+22.1%)	7,732 (△0.7%)	13,187 (+70.5%)	22,214 (+68.5%)	8,815 (△60.3%)																											
투자건수	774	719	1,054	1,520	885																											
피투자기업 수	418	405	604	757	532																											
기업당 투자액	18.6	19.1	21.8	29.3	16.6																											

부처	내용	일시
	□ 정책대응 방안 ▶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10.5조원 자금 추가 지원 - 초기 6.1조원, 중기 1.9조원, 후기 0.4조원 -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마중물 확대 - 첨단전략산업 투자목적 펀드 조성 (기은 3년간 +2조원 이상) - 코넥스 상장(추진)기업 투자 펀드 추가 조성 (한국거래소 등 +0.1조원) - VC의 출자금 특별보증 도입(신보) 및 대상·한도 확대(기보) - 자본금 직접투자 목적 대출금 보증(80%) 신설 (기보) - 유동화증권 발행을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까지 지원 (신·기보) -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 촉진 -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확대 (자기자본의 0.5% → 1.0%) - 국내 창업기업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한 해외법인(예: 지배주주가 한국인인 해외법인)에 대해 CVC 해외투자 확대방안* 마련 * (예시) (현행) 해외기업(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단체) 대상 투자는 20%까지만 허용 → (개선) 국내기업에 준하는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는 해외기업 투자에 - M&A 목적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現 40% 이상) 폐지, 상장법인 투자규제(現 20% 이하) 완화 및 특수목적회사* 설립 허용 * 특수목적회사가 자기자본의 최대 4배를 대출받아 M&A 등에 투자 가능 -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 - 혁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촉진을 위한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및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한 경영권 안정화 * 금년 중 근거법령인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 변호사 등 일부 전문자격증 보유자 → (추가) 관련 분야 경력, 학위 보유자까지 부여 대상 확대 - 벤처기업확인 시 바이오·서비스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 도입 및 벤처기업법 일몰(~'27년) 폐지 - 벤처펀드 등록절차 간소화, 투자·펀드 통계 고도화(신기술투자조합 실적 등 포함) 등 벤처투자 관리·감독 체계 효율화 ▶ 투자 촉진 인센티브를 전면 적용한 모태자펀드 2조원 이상 조성 - 중기부, 문체부, 환경부 등 '23년 모태펀드 1조원 이상 출자를 통해 약 2조원 이상 자펀드 조성 추진 '23년 선정 자펀드에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 전면 적용 - 기준 투자목표비율* 이상 투자시,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지급 우대, 차년도 출자 사업 가점 부여 등 혜택 ▶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 - 민간 벤처모펀드 조기 조성을 위해 마련한 출자, 운용, 회수 단계별 세제 인센티브* 개정도 연내 신속 추진 (기재부 협조) * 법인의 모펀드 출자 세액공제 최대 8%(당해연도 출자×5% + 직전 3년 대비 출자 증가분×3%)	

부처	내용	일시
	③ 양파·무·감자 등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노력 지속 ④ ‘하루 1kWh 줄이기’ 등 에너지 절약 실천 캠페인 확산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연구개발기술사업화 규제 개선 정부 R&D예산 30조 시대* 진입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 노력과 병행하여 국가 R&D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R&D예산 : 29.8조원('22) → 30.7조원('23) / 민간부문 포함한 R&D투자 100조시대 진입 * GDP 대비 국가 R&D투자 비중 세계 2위(4.81%), 절대규모 세계 5위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6개 관계 부처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중기부, 기재부, 특허청)와 함께 마련한 「국가R&D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는 이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국가R&D 성과의 활용·확산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 그동안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연구생산성 제고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국가R&D를 통한 우수한 연구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확산되어 실용화·사업화 및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의 강구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기술무역 수지비('21) : 수출액 14,921백만달러/수입액 18,692백만달러 = 0.8 이에 추진단은 관계기관과 함께 연구 및 기업현장으로부터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가로막는 생생한 규제사례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처별 법령마다 상이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 비율을 통일 및 기준 완화 (20% → 10%)를 통해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쉬워지도록 개선 ② 창업을 위한 임직원 휴직·겸직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확대·허용하여 더 많은 교수·연구원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③ 질적 평가 중심으로 지침 개선하여 과도한 특허출원을 막고, 미활용 특허 처분 자율성 부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유지비용 및 행정부담을 저감 ④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규제를 폐지하여 기관특성에 따라 내외부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핵심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 ⑤ 누구나 가능한 ‘통상 실시’만 허용되던 기술이전방식을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양도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 개선하여 기술이전 촉진 및 수요자의 지재권 확보·행사를 보장 ⑥ 기술이전에 따라 납부하는 기술료의 징수에 필요한 서류 간소화, 징수방법 다양화,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현장의 행정부담을 경감	2023-05-02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반도체법, 수출통제, 반도체 협력 관련 韓美 공동선언문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상무부와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CCD)*”를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美 반도체법, IRA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데 따라, 동 이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함 *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upply Chain Commercial Dialogue) : 우리 산업부 장관과 美 상무부 장관 간 설치 합의한 첨단산업 및 공급망 협력채널 (22.5월 美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합의) 양국 장관은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장관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등)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함 ②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며 긴밀히 협력 ③ 한미 양국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3大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분야에서 R&D, 기술실증, 인력교류를 추진	2023-04-28
금융 위원회	• 수출기업 현장 방문 및 수출기업 금융이용 점검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범정부 수출전략회의* 추진체계의 일환으로써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공급망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영업현황을 점검하고, 수출기업의 업황 개선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22.11.23 출범한 대통령 주재 회의체로서 조부처 장관 참석 (→“전부처의 수출지원 역량 강화 및 수출지원 과제 발굴” 추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최근 고금리로 인해 수출기업의 생산 및 해외투자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큼 → 금리우대 대출상품 공급이 확대되기를 희망 ② 수출기업은 통상 수출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은행권의 수출환어음 할인 또는 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는데, 할인을 감면 등 이용조건 편의 개선 희망 ③ 기업 간 납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의 회수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채권회수 시점까지 필요한 유동성을 저리로 지원해주길 희망 ④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을 위한 판로개척 및 외화자금 관리 기법이 취약 → 정부에서 적절한 컨설팅 제도를 운영해 주기를 희망	2023-05-02

부처	내용	일시
국회입법조사처	•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 방식의 재검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 방식의 재검토 -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의 단계적·유기적 입법 방식에 대한 고려」를 주제로 한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온라인 플랫폼 규제틀 마련을 두고 3년 가까이 입법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갑을관계 문제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고려와 시정 요구가 부각됨으로써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경쟁의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 법·정책 마련의 기본 방향과 그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적 재검토’가 요구됨 주요 고려요구 사항으로는 ① ‘Online Platform’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Big’에 대한 경쟁관점의 우려 - 모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의 구조적 왜곡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Big’ 즉 ‘거대’ 기업에 대한 경쟁법적 감독 요구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규제 요구로 볼 수도 없음 ② 개별 거래관계와 시장 구조적 관점에서의 동시적 접근 - 이른바 ‘단독행위규제’로 일컬어지는 남용규제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서로 무관한 경쟁법·정책적 영역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입법과 그 집행에 있어서 양자에 대한 동시적 고려와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③ 디지털 경제에서 기존 규범체계의 유효한 작동 여부 확인과 개선 방향 - 이는 단순히 개별법 하나를 제·개정한다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후속 입법의 일관성과 체계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로서 함의를 가짐 ④ 실체법 및 절차법적 차원의 병행적 대응 필요 - 실체법 규정의 절차적 차원의 긍정적 기대에 더하여 경쟁침해 내지 소비자 피해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법적 개선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2023-05-02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행정 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5.3. 시행) 세제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혼인 전 소유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기준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혼인 전 소유 주택의 1세대 1주택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재산세 처리 현황에 맞추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56조의2, 별지 제58호의3서식, 별지 제59호서식)	2023-05-03
금융 위원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5.2. 시행) 소규모 비상장 주식회사의 회계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회계정보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지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지한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의 범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 축소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제4조 및 제15조제3항) -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정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종전에는 1천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억원 이상으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되, 이해관계자가 많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은 종전대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로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종전에는 1천억원 미만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5천억원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하되,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크게 요구되는 금융회사 등은 종전대로 1천억원 미만인 경우로 함 ② 위반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 허용 (제31조제7항 신설) -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신고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③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확대 (제32조) - 종전에는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지한 자가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면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도록 감경 사유를 확대함	2023-05-02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1.3. 시행 예정)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상호저축은행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 이 영에서는 과징금의 가중·감경 사유만을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과징금의 상한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한 부과기준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징금 산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 영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제30조의2제1항, 별표 4의2 신설)	2023-05-02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행정 안전부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정부내 칸막이 현상을 해소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데이터 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 제도를 확립하고,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후 활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명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등의 역할을 확대하여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범위를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유데이터의 정의 (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 공공기관이 직무상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공공기관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정의함 ②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안 제2조제3호가목 신설) - 이 법의 수범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추가함 ③ 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책무 추가 (안 제3조제3항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제·개정, 중장기 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수행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④ 데이터의 공유·제공에 관한 규정의 우선 적용 (안 제4조) - 기존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정하고 있었으나, 범정부 데이터 공유체계 마련을 위해 데이터의 공유·제공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내에서 법 적용시 충돌 및 혼선을 방지하도록 함 ⑤ 데이터의 가명 처리 및 활용 (안 제4조의2 신설) -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⑥ 데이터 공유 체계 정립 (안 제6조제3항제4호·제7조제3항제5호의2 및 제8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모든 공공기관은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구축·관리하며, 구축된 개별공유데이터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2023-04-2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데이터 공유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목적외 이용 금지 등을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해당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하여 데이터 공유 및 제공 의무에서 제외되는 데이터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함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운영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가공·결합하여 플랫폼에 저장·관리하거나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공개된 데이터를 플랫폼에 저장·관리할 수 있고, 여러 기관이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해당 데이터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공유데이터의 처리, 공유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 공유 등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⑦ 공유데이터 활용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안 제9조제2항 신설) - 기존의 등록된 데이터와 달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되거나 저장·관리되는 공유데이터는 제공받은 데이터와 달리 목적 외 이용 금지 조항이 공공기관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제3자 제공 금지와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관리사항을 추가함 ⑧ 제공한 데이터의 공유데이터 구축·관리 의무 부여 (안 제12조제2항) - 공공기관이 제공한 데이터는 공유되지 않은 데이터이지만 제공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분리되는 등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므로, 제공 후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 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조정 기능 추가 (안 제13조제1항) -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 구축·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기능을 추가함 ⑩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강화 (안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7호 신설) -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운영 주체인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데이터 연계와 관련한 기술적 지원 및 공유데이터의 저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에 필요한 분석자원이 플랫폼에서 제공되도록 기능을 추가함 ⑪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역할 확대 (안 제21조제2항)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촉진 사업 추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운영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추가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4/27(목)~5/31(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정책과)로 제출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청정수소 시장 상황, 기술 수준, 국내 특수성 및 국제 동향을 고려해 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안 제2조의2) ②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은 이산화탄소 등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청정수소의 생산 방법, 운송 방식 및 적용 기술의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안 제34조의10) ③ 청정수소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증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청정수소인증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안 제34조의11) ④ 청정수소 등급별 생산 및 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우수 기업 등의 선정 및 포상 등 청정수소 생산·사용자의 지원수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4조의12) ⑤ 청정수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개선명령 및 인증의 취소, 청정수소의 인증유지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4조의13부터 제34조의15까지) ⑥ 청정수소 생산·수입·판매자에게 매분기 청정수소의 생산·수입·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항목과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안 제34조의16) ⑦ 청정수소 인증기관의 대상 범위, 인증기관의 종류와 기능,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관계자 등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4조의17부터 제34조의18까지) ⑧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 및 청정수소 생산·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7조제5항) ※ 의견 제시기간 : 2023/5/2(화)~6/1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정책과)로 제출	2023-05-02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및 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청정수소 인증표시를 인증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안 제9조의4) ②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청정수소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기타 인증기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안 제9조의5) ※ 의견 제시기간 : 2023/5/2(화)~6/1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정책과)로 제출	2023-05-02
보건복지부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8319호, 2021.7.20.공포)으로 신설된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법률로부터 위임된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정함 (안 제4조의2~제4조의3) - (공개 방법)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은 지출보고서 내역을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5년간 공개 - (정정 요청) 의료인 등은 공개된 지출보고서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정정 요청 - (관리시스템) 지출보고서 공개·관리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업무위탁) 지출보고서 관련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2023-04-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료인 등의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 확인 의무 신설 (안 제3조제2항) ※ 의견 제시기간 : 2023/4/28(금)~6/7(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로 제출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약사법」개정(법률 제18307호, 2021.7.20.공포)으로 신설된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시 영업소 명칭도 함께 변경할 경우 지위승계 신고와 별개로 의약품 판매업 변경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시 명칭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위승계 과정에 신청인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세부규정 마련 및 관리시스템 운영 (안 제44조의4~제44조의5) - (공개 방법) 의약품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 내역을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5년간 공개 - (정정 요청) 의료인 등은 공개된 지출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약품공급자 등에게 정정 요청 - (관리시스템) 지출보고서 공개·관리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업무위탁) 지출보고서 관련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②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시 명칭변경 절차 간소화 (안 제59조제3항) ※ 의견 제시기간 : 2023/4/28(금)~6/7(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로 제출	2023-04-28
환경부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9151호, 2022. 12. 30. 공포, 2023. 12. 31. 시행)됨에 따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생산목표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23-04-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설정 (안 제3조) - 돼지 사육두수 2만두 이상 사업자,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1천톤/년 이상 사업자를 민간의무생산자로 규정 ②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안 제4조, 별표 1) - 5년 주기로 규정한 장기 생산목표율을 반영하고,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③ 과징금 감면 사유 (안 제6조) - 의무생산자 책임이 없는 외부적·내부적 상황 및 그 외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의 경우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감면 ④ 재정지원의 대상 (안 제8조) -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함께 활용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설치사업과 함께 개선사업도 지원하며, 각 시설의 운영사업 지원도 포함 ⑤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안 제9조) -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보고 및 검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 재정지원 등 지원 업무 및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 ※ 의견 제시기간 : 2023/4/28(금)~6/9(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생활하수과)로 제출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9151호, 2022. 12. 30. 공포, 2023. 12. 31. 시행)됨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생산계수, 과징금 감면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 회수·생산계수 산정 (안 제3조, 별표) - 하수찌꺼기,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은 실제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가축분뇨(돈분)는 ‘사육두수×배출원단위’를 통해 발생량을 산정 - 공공의 가축분뇨(돈분) 회수계수는 돈분 공공처리율을 반영하고, 생산계수는 시설별 생산 현황 및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규정 ② 공공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시 인정비율 (안 제4조) - 생산량 구입 실적의 90%만 의무생산자의 생산량으로 인정	2023-04-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절차 (안 제5조) -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거래하는 경우,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바이오가스센터의 장이 절차를 관리하도록 규정 ④ 과징금 감면 대상 구체화 (안 제6조) - 1,000Nm³/일 이상 규모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착공한 경우 - 관내 발생 유기성 폐자원 전량을 바이오가스화 하더라도 생산량이 1,000Nm³/일 이하인 경우 ⑤ 적합성 평가 및 배출량 등 확정 (안 제8조) - 바이오가스센터는 보고된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생산목표제 관련 실적 정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확정 - 제출 자료와 관련하여 필요시 시정·보완 및 시험·검사 등을 거치며, 확정된 정보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의무생산자에게 통지 ⑥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 (안 제9조) - 비의무생산자도 거래신고서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바이오가스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생산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 ⑦ 지역 주민참여의 범위·기준 (안 제14조) - 범위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투자금 총한도는 시설 설치비용의 10% 이하, 투자자별 한도는 세대당 3천만원 이하로 규정 ※ 의견 제시기간 : 2023/4/28(금)~6/9(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생활하수과)로 제출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최대 2억원으로 한정)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신설 (안 제15조제1항)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액의 기준인 '매출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규정 *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 명확화 (안 제15조제2항) -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와 객관적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	2023-04-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 (안 제15조제3항, 별표 4)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영업정지 개월별로 매출액 정률 부과 * 영업정지 1개월(매출액의 2/100), 3개월(매출액의 3/100), 6개월(매출액의 5/100) ※ 의견 제시기간 : 2023/4/28(금)~6/9(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폐자원관리과)로 제출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3.1.3., 일부개정, 법률 제19178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적격투자기관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추가 (안 제2조의3) ②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 분리 (안 제11조의3에서 제11조의6) - 종전 제11조의3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등(제11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제11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제11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제11조의6)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③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을 성격에 따라 분리 규정 (안 제11조의3제1항) ④ 주식매수선택권 시가평가방법의 명확화 (안 제11조의3제2항) 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 (안 제11조의3제4항) - 종전 주식매수선택권은 시행령에 열거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되었음 - 외부 전문가 기준에 경력 및 학력 요건을 신설하여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 더 많은 외부 전문성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⑥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이동 및 신고 절차 규정 등 (안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6) ※ 의견 제시기간 : 2023/4/28(금)~6/7(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벤처정책과)로 제출	2023-04-2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3.1.3., 일부개정, 법률 제19178호)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	2023-04-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종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의 요건과 연구기관의 요건을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하향 (안 제4조의3) 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철회 신고 서식 추가 (안제4조의4, 별지제3호, 별지제4호) ※ 의견 제시기간 : 2023/4/28(금)~6/7(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벤처정책과)로 제출	
금융 위원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운영의 독립성 제고 (안 제34조의2 신설) - 분조위 참석위원을 위원장 지명이 아닌 분야별 추천방식으로 변경(안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하고, 분조위 의사운영 및 분쟁조정절차와 관련된 개정권한을 분조위에도 부여하여 분조위 운영의 공정성 제고 ②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상정제도 도입 (안 제33조제6항·제7항) - 금융분쟁의 규모,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합의권고 절차없이 곧바로 분조위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 마련 ③ 매도증권담보대출을 적정성 원칙 대상에서 제외 (안 제12조제1항) - 상장증권 등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담보로 한 매도증권담보대출을 적정성 원칙 대상에서 제외 ④ 사모펀드 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 제외 허용 (안 제14조제1항) - 사모펀드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핵심상품설명서와 금소법상 상품설명서가 제공되고 있어 상품설명서 간 중복내용은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 ⑤ 자료열람요구권 열람기한 명확화 (안 제26조제4항) - 소비자가 권리구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화 ※ 의견 제시기간 : 2023/5/2(화)~6/1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로 제출	2023-05-02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정무위원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지급 한도를 매출액의 35%로, 다단계 판매품의 가격 상한을 16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후원수당의 총지급 한도(매출액의 35%)는 2002년에 정해진 이후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2012년 법 개정으로 명칭·지급형태 등과 관계없이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후원수당에 포함시켜 판매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유사 업종으로 다단계판매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받는 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총지급 한도(매출액의 38%)는 다단계판매보다 높아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다단계 판매품의 가격 상한은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나 그 타당성 검토 기준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2012년에 시행령 개정으로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이에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 총지급 한도를 후원방문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다단계 판매품의 가격 상한을 물가상승률, 국민총소득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유사 업종 간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제9호 등)	2023-04-27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금융채권자들과 기업간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제도를 규정한 절차법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및 일반 상거래투자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는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음 동법은 최초 제정된 이래 다섯 차례 한시법으로 재입법 되었고, 오는 2023년 10월 중 법률의 효력이 상실될 예정임. 그러나 대내외 경제 여건상 기업구조조정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구조조정 시기를 실기하여 워크아웃, 회생 등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하지 못하고 파산으로 직행하는 기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 근거해 지난 6년간 관리절차가 종료된 103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47개사가 부실 해소 등을 통해 워크아웃 절차를 종료하는 등 소정의 입법 취지가 실현되었다는 평가임.	2023-05-0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특히 향후 코로나에 따른 이자 상환유예 등 지원조치의 해제에 따라 부실위험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현행법의 시효연장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거나 졸업한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금지원의 근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하지만 현행법에선 금융채권자를 통한 신규공여만 규정하고 있어, 신규공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시한을 5년 연장함과 동시에 관리 기업이 요청하고, 협의회가 의결하는 조건으로 기존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이 아닌 자의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함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반대매수청구도 제한함으로써 워크아웃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 및 금융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협의회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음 (안 제18조제2항) ②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함 (안 제1585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현행법에서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공매도의 조건에 관하여는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투자자 사이에 상환기간과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의 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이에 차입공매도 이자율, 상환기간,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투자자가 기관·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18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2023-05-04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 보험금을 한도를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예금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 (안 제32조제3항 신설 등)	2023-05-04
기획재정위원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당시 현행법은 13%를 기본세율로 하되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3%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1988년 이후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여파로 물가가 불안해지고 소비 여력이 감소하여 경기침체가 악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경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인하 및 소비 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부가가치세는 기본 10%로 하되,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도입함으로써 국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2023-04-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4인)」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신기술과 결합되어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엄청난 속도로 기술발전이 진행되는 것임. 이런 측면에서 기술취득과 기술이전 등이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연구개발비 절감을 포함하여 연구위험 분산, 신제품 출시 가속화, 제품 수명에 따른 기술개발 위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전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함 이에 현행 조특법에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2023-04-2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로 기한이 제한되어 있음 이에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과 기술이전을 독려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 중 세액감면 규정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그 감면액을 늘려주려고 함 (안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지역에 민간 사업시행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5년간 감면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난으로 수도권 집중과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지역 산단의 경우 수도권 인근 산단에 비해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여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023-05-0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두어 전기 또는 수소전기로 운행되면서 에너지소비효율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버스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국내의 전기버스에 대한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이 매년 확대되고 있고 2022년 상반기에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이 약 50%에 육박하여 국내의 관련 업계를 지원·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국내의 친환경 버스 생산기술을 제고하고 그 유통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친환경 버스에 대한 별도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023-05-0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내국인이 친환경 버스를 제조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40%(중소기업의 경우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친환경 버스 개발을 독려하고 관련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3 신설)	
	• 「<u>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5인)</u>」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는 지방의 인구감소 현상과 함께 지방 도시의 자생력 약화, 기업 투자유인 하락, 청년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음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지역투자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현행「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한시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임 이에 내국법인의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법인세율을 달리 정하고자 함.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적용 법인세율을 100분의 50까지 낮춤으로써 기업의 투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고,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함 (안 제55조제1항)	2023-05-04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u>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0인)</u>」 현행법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로 이용자 등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그에 따른 사업자의 구제조치가 미흡하여 이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2 및 제98조제1호의2 신설)	2023-04-2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5인)」 최근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입지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데이터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설치자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69조의3 및 제104조제5항제10호의2 신설)	2023-04-28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류의 사용, 제조 등에 대한 정보가 자신이 운영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여야 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및 매매의 알선 등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했을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징금, 등록의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약거래를 억제하고자 함 (안 제22조의5)	2023-05-0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은 자국산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내국기업이 생산한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가 소프트웨어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현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 의하여 공공 IT구매사업 규모를 2020년 5조원에서 2022년 이후 10조원으로 2배 규모 확대할 계획임	2023-05-03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그런데 현행 법령의 소프트웨어 관련 정의는 다소 포괄적이고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 정책에서도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관련 정책이 국내 중소·벤처 소프트웨어기업들이 개발한 국산 상용소프트웨어 성장으로 집중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현재 광범위하게 정의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한편 “원천기술 소프트웨어”, “패키지소프트웨어”,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 국가기관 등의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의 우선 구매 노력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14조의2 및 제54조제3항 신설 등)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5인)」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가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선설비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제한, 운용정지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데이터센터·고압송전선의 설치·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데이터센터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등에 대하여 운용제한, 운용정지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여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의4 및 제86조제3호의2 신설 등)	2023-05-0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이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단체의 설립·운영과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스포츠는 직접적인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여가선용 및 자아실현을 위한 대안적 스포츠로 기능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2023-04-2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 조성, 단체 설립·운영 및 대회 개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조의2 신설)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u>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2인)</u>」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위탁기업들은 수탁기업협의회를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수탁기업협의회에 참여한 수탁기업들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부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임 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협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비해 약한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보완해 주고 있음 따라서, 수탁기업협의회 법제지위를 확보하고, 위·수탁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수탁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안 제17조제2항) ② 계속적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위탁기업은 약정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까지 사이에 약정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거절 사유를 명시함 (안 제21조의3 신설) ③ 수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의회가 해당 위탁기업에 대하여 약정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21조의4 및 제43조제3항제3호 신설)	2023-04-28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여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5조 및 제50조)	2023-05-02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7인)」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입증요건이 과도하여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4조 및 제36조)	2023-05-02
보건복지위원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4인)」 세계적으로 설탕 등 당(糖)의 위험성이 알려져 있음에 따라 당의 사용 및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영양성분 표시는 당의 총량만 표시하게 되어있음에 따라서 첨가당(added sugar)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불분명하고, 천연당이랑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양성분 중 당을 표시할 때 당의 총량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당인지, 첨가당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2 및 제31조제1항제3호 신설)	2023-04-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의약품등의 허가 및 갱신 심사, 재심사, 재평가,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 심사 등은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한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심사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심사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의약품등의 허가 및 갱신,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심사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약품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의약품등 심사관으로 임명하여 의약품등의 허가 및 갱신 심사, 재심사, 재평가,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의약품등 심사관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등의 허가 및 갱신 심사 등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약품등 허가·심사 업무의 역량을 축적하고 급변하는 첨단·융복합 기술 등을 활용한 의약품등의 개발에 대응하도록 하여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등을 허가하고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14항, 제31조의5제4항, 제34조제5항, 제92조의2 개정, 제83조의10 신설)	2023-05-04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 당시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구직급여,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 등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이 규정됨 이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퇴사)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이에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률은 4%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그런데 자발적 이직자 중 청년 세대(만 19~34세)의 경우, 구직시장에서 낮은 협상력과 정보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역선택 가능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이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임 이에 청년 이직자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1회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직업개발훈련을 의무화하여 실업 상태인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탐색 기회의 제공이라는 고용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안 제5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2023-05-0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민간공익단체 (사)직장갑질 119의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80.6%가 연차 유급휴가를 연내에 소진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 건강진단의 경우 사업주의 의무사항임에도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아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일반건강진단의 수검률은 2021년 기준 74.2%로 전년 대비 감소하여 25% 가량이 건강진단을 수검하지 않았음. 특히 암검진 수검률은 대상인원(40대 이상) 중 56.6%로 나타나 40% 정도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암검진을 수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반건강진단 수검 결과 질환 의심자가 33.2%, 유질환자가 25.2%로 절반 이상이 정상 외의 결과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62조의2 신설)	2023-05-04
국토교통위원회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이 견딜 수 있도록 내진(耐震)설계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2층 이상 건축물과 같은 일정한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에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나 개정 시점마다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실제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은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진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진능력 향상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4 신설 등)	2023-05-04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별첨1】참조		
국회도서관	5/8(월) 15:00	국회도서관 IT 세미나 개최 (최신 기술 이해 제고를 위한 4차 강연) - 인공지능(AI)이 말을 걸다, 디지털 대전환(DX) - 하정우(네이버 Cloud AI Innovation 센터장)	국가전략 정보센터
	5/10(수)	금주의 서평 제627호 발간 - 플랫폼 임팩트 2023 (강재호 외 11인)	
예산정책처	5/10(수) 10:30	인공지능과 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인공지능 정책 및 동향	의정관 505호
입법조사처	5/10(수)	「NARS 현안분석」 발간 - 양육비 대지급제 해외 운영 사례:아동빈곤 해소와 양육비 이행 강화의 두 가지 기대효과	
	5/11(목) 14:30	「미래를 위한 한중관계의 진단과 모색 세미나」 개최	국회 체험관
	5/12(금) 13:00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학술대회」 공동개최	포스터 센터
미래연구원	5/9(화) 09:30	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 -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의원회관 1소회의실

[별첨1] 제406회국회(임시회) 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외통위	5/9(화) 14:00	전체회의	- 법안 등 상정 - 외교부 등 소관 현안보고
농해수위	5/11(목) 10:00	농림법안소위	- 법안 심사
	5/11(목) 10:00	해양법안소위	- 법안 심사
산자중기위	5/11(목) 13:3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상정 - 산업부 등 소관 현안질의
환노위	4/25(화)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상정 -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 계획 보고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국토위	5/9(화) 10:00	교통법안소위	- 법안 심사
	5/10(수) 10:00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정치개혁특위	5/9(화) 14:00	전체회의	- 간사 및 소위원장(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선임 의 건 - 법안 상정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8(월) 09:30	글로벌 SMR 파운드리(Foundry) 구축을 위한 토론회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5/8(월) 14:00	윤석열정부 농업정책 1년, 기대와 좌절을 말한다	윤미향·소병훈· 이개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5/9(화) 10:00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정춘숙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회실
5/9(화) 14:00	2023년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비전선포식 - 당신의 잠재력을 펼쳐라!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5/9(화) 14:00	MBC 방송문화진흥회 문제점과 대안 모색	홍석준·권성동 의원실, MBC 제3노동조합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5/9(화) 16:00	한-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 발전 방안 모색 간담회	이용빈·김병욱·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306호
5/10(수) 08:00	경제는 민주당! : 제7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
5/10(수) 10:00	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망 강화 정책 토론회	박완주·유의동· 이태규·문진석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5/11(목) 10:00	2023 FORUM 한국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	한정애·강기윤 의원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연합회	국회도서관 강당
5/11(목) 14:00	2023년 제2회 국회 정책토론회 -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연구개발 체계 혁신	조승래·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5/11(목) 14:00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김영주 국회부의장, 서울환경연합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5/11(목) 15:00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	권철승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5/12(금) 10:00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3 - 건설산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도서관 강당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83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4/2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1호 발간 -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미국의 입법례	
	4/26(수)	금주의 서평 제625호 발간 - 도시의 생존	
	5/3(수)	금주의 서평 제626호 발간 - 디지털로 욕망을 충족하고 지배받는 시대	
	4/27(목)	「현안, 외국에선?」 제58호 발간 - 프랑스의 청년 니트 지원정책 동향 및 시사점	
예산정책처	4/24(월)	「부동산 보유세 과세가격의 이슈 및 시사점」 발간	
	4/27(목)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분석」 발간	
입법조사처	4/25(화)	「NARS 입법·정책」 발간 -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동향과 쟁점 분석	
	4/25(화)	「이슈와 논점」 2086호 발간 - 조선노동당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와 북한의 식량 문제	
	4/25(화)	「이슈와 논점」 2087호 발간 - 재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향후 과제	
	4/28(금)	「이슈와 논점」 2088호 발간 - 은행의 메타버스 진출과 금융·경쟁분야 고려사항 (금산분리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4/28(금)	「NARS info」 40호 발간 -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5/2(화)	「이슈와 논점」 2089호 발간 - EU의 청년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	
	5/2(화)	「NARS 현안분석」 288호 발간 -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 방식의 재검토	
	5/4(목)	「이슈와 논점」 2090호 발간 -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기구 전환의 쟁점과 과제	
미래연구원	5/1(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7호 - 만들어진 당원:우리는 어떻게 1천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4/24(월) 14:00	<u>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u>	김희곤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4/25(화) 13:30	<u>알뜰주유소 1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u>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4/25(화) 14:00	<u>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u>	최승재·김성주 의원실, 블록체인 포럼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4/26(수) 14:00	<u>챗GPT와 AI 혁신 시대, 우리 사회의 방향은?</u>	용혜인 의원실,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의원회관 5간담회실
4/28(금) 10:00	<u>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과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방안 세미나</u>	안병길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5/1(월) 09:30	<u>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u>	용혜인 의원실, 전국환경노동조합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5/4(목) 14:00	<u>한국웹3.0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u>	엄태영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실
5/4(목) 14:00	<u>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u>	이인선·윤창현 의원실 여의도연구원	의원회관 8간담회실

5. 지난 주(4/26~5/7)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분야	내용
4/26(수)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A사 경남공장 하청노동자 협착 사망사고) 도급인 A사 대표이사 징역1년 실형선고(법정구속) 및 시사점
4/28(금)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4/28(금)	노동	불법파견 사건에서 MES의 의미에 관한 판례의 태도
4/28(금)	공정거래	조사절차규칙 및 사건절차규칙 개정,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 및 시행과 그 시사점
5/2(화)	건설/부동산	방송제작센터에 관하여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5/2(화)	건설/부동산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에 따른 완화된 건축기준을 중첩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